

의안번호	2205598
의 퇴 인	장동혁의원
회 답 일	2025.2.4.
추계번호	24D507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례) 신설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2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8조의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 (「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신설	미대상: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안 제28조의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례 도입(안 제24조의2 신설)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라 함)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요건보다 완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요건보다 강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안 제28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특화산업 지정 및 지원대상 사업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특화산업의 지정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확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